

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 어항법에서 어항관리를 강조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어항의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어항에 관한 연구조사 등은 학계와 업계, 관련단체 등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항의 감리, 준공검사 등 실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수행해 왔다. 그런데 어항의 감리와 준공검사 등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정부는 어항관련 정책개발과 행정적인 지원에 더욱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항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어항에 관한 연구조사 등도 이들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할 때 어항관리, 어항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연구조사, 감리 등은 어항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바로 어항협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어항법 개정을 통해 동 협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동 협회가 과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선 어항관리를 제외한 기술개발, 연구조사, 감리 등은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항관리는 그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장기적인 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몇개 항에 대해서 관리를 담당하는 데는 당장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전국의 어항을 전부 어항협회에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국의 국도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체계는 현재의 어항협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 그 결과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준비에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종 어항 확대 지정으로 낙도벽지어촌발전을 촉진

金 昇 〈新安郡水協 專務〉

지난 5월 18일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어항법이 1993. 12.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하여 주무 부처의 인가를 받아 발족 운영

되어 왔던 자율단체 성격인 한국어합협회가 특별법에 의한 법정단체 성격의 특수법인체로 격상되어 새로 탄생하게 된데 대해, 특히 어항법의 개정과 함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성취해낸 협회, 업계, 관계 인사와 수산청 당국에 감사한다.

금번 개정된 어항법은 69년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진 전문개정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보는 견지에선 시대상황의 변화와 필요에 의해 종래의 수산업 진흥을 위해 바다의 효율적 이용과 통제위주로 개발하고 관리되어 왔던 어항의 개념이 어촌, 어민의 유지 보존과 국토의 유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어항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산업화와 어업근대화 과정에서 금후, 예상되는 낙도·벽지 도서지역 어촌문제는 예측을 불허할만치 빠른 속도로 주민이 떠나버린 섬, 버려진 땅, 황폐한 국토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미리 예방하여 유지 발전시켜 갈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이들 어촌지역은 우리 국토의 맨끝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것이고 소득만 보장되면 어촌이 계속 유지 보존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생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싫점에서 이루어진 제도 개선이기 때문이다.

어항법 제1조 목적에서 볼것 같으면 종전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선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넓은 어항구역의 확보와 어항 시설의 확충 및 기능의 다양화로서 붕괴 위기에 처한 낙도·벽지 도서지역 어촌문제를 어항을 중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 선 어항으로 지정되면 넓은 어항구역을 확보하여 어항구역안에 ①어항기본시설 ②기능시설 ③복지시설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 편의시설 ⑤위의 각 시설의 부지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하여 금후 어항을 중심으로 낙도·벽지 도서지역 어촌의 정주권을 조성해 갈 수 있는 제도가 비로소 마련된 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개정 법률상에서 대비해서 비교 고찰해 본다면 어항구역내에 어촌주민의 복지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의시설까지 국비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 시설 된다면 낙도·벽지 도서지역 어촌·어민의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요체라 할 수 있는 전천후 해상정기 교통망 체계가 어항시설을 모체로 하여 이루어지고 어항시설내에 공중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시설로서 헬기장을 포함한 각종 기능·복지·주민 편의시설과 광장, 조경시설등 휴식공간은 물론 각종 레저시설까지 확보되어 종래의 좁은 의미의 어항기능이 우리 국토의 맨끝 변방에 위치한 낙도·벽지 도서지역 어촌의 유지 보전과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의 관광자원화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볼때 이번 어항법 개정은 단순한

어항개발의 촉진과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항개념에 일대변혁을 초래하는 혁신적인 개정 법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와같이 어항의 개념과 기능이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어항의 건설기술이나 조사연구등 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능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담당해 줄 특수법인의 설립이며, 이러한 사회정책적 배경하에서 어항 관계인이나 전체어민들이 어항법하의 특수법인으로 새로 탄생되는 어항협회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클 수 밖에 없다.

새로 발족되는 어항협회에 바라는 사항 또한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중병을 앓고 있는 낙도·벽지·도서지역 어촌의 문제를 제3종어항의 확대지정과 개발촉

진을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가기위해서는 첫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낙도·벽지·도서지역 어촌의 문제는 수산업이라는 단순한 산업정책으로서는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국토 유지 보전과 어촌의 유지 발전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항협회는 조사 용역 및 연구 홍보, 어항건설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금후 3종어항 지정 및 개발방향을 수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낙도·벽지·도서지역 어촌의 유지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지정하고 그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위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가는 일들을 어항협회가 선도해 주기 바란다. ¶

기술개발도 촉진 어촌개발에 求心體 되어야

張 奉 勳 〈長項水協 專務〉

지금 까지의 한국어항협회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자율단체로서 지난 6년여동안 나름대로 우리 나라 어항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러다 그간에 어항법 개정을 위하여 피나는 각고 끝에 개정 어항법이 보장하는 특별 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한국어항협회가 새

롭게 태어나게 됨에 따라 어항발전을 위한 크나큰 사명을 수명케 되어 수산인의 기대가 큰 것이다.

1969년에 어항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지금껏 어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24년이 경과된 것이다.

이제 전세계가 바다에 관심을 집중하여